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일본은 이 조항을 근거로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가족 이윤재 씨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가 부친의 미수금 5천828엔을 1인당 2천원으로 계산해 1천165만16천원을 지급하기로 하자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씨는 현재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지원금 규정 탓에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고 개인청구권을 제한한 한·일 청구권 협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 한일청구권 협정 제2조 제1항에 청구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이 내려진 12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판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현재는 12월 23일 이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현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이다. 따라서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을 제한하는지는 현재가 따로 판단하지 않은 셈이다.

현재는 헌법소원 청구에 '재판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결정했다. 헌법소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가족이 미수금을 달라는 행정소송을 내면서 함께 낸 것인데, 한·일 청구권 협정의 위헌 여부가 행정소송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현재는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 씨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미수금 계산법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계산법을 규정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현재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환율을 참작한 산정방식은 나름의 합리적 기준으로 화폐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이 시작된 해인 1975년을 기준으로 1945년부터의 일본 소비자물가상승률인 149.8배에 당시 엔화 환율 1엔당 1.63원을 곱하고 다시 1975~2005년 한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인 7.8배를 곱해 환산방식을 정했다.

현재는 "미수금 지원금이 보상금이 아니라 인도적 차원의 시혜적 금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원금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곧바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현재 "주민번호 변경 허용해야"…2018년부터 가능할 듯

현재는 12월 23일 출생신고 때 정해진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결정도 내렸다.

인터넷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강모 씨 등이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게 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현재는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 현재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를 개선입법 시한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현행 규정을 계속 시행하도록 했다.

현행 주민등록법 제7조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규정했다. 시행령은 가족관계가 바뀌었거나 주민등록번호의 오류가 발견된 경우 예외적으로 정정하도록 했다.

현재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는 합헌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법규가 합헌이라는 결정도 나왔다.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 범죄자에게 검사나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현재는 이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현재는 "약물치료는 대상자 자신을 위한 치료로 한시적이며, 치료 중단 시 남성 호르몬 생성과 작용의 역제가 회복 가능하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전문의 감정을 거쳐 성도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청구되고 치료 대상자도 좁게 설정하고 있다"며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치료가 이뤄진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조직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7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 251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3천495개의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4단계 조직으로 구성돼 있다.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각 재외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는 사무처를 두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는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두고 있다. 각 선거관리위원회에 대응해 그 산하기관으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그리고 선거연수원을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다.

한편,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에서 각각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고 있다.

■ 구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등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모두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임명·선출 또는 지명된다.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4인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6년이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는 각각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인복 대법관이 2013년 3월 6일부터 제18대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위원으로는 2015년 12월 31일 현재, 대통령이 임명한 문상부 상임위원, 김정기 위원, 최윤희 위원과 국회가 선출한 이상한 위원, 김용호 위원, 김태현 위원 그리고 대법원장이 지명한 조병현 위원, 조용구 위원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직 공무원은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정무직 3명, 별정직 19명, 일반직 2천789명, 연구직 1명 등 총 2천 812명이다.

■ 주요 활동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설치된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시·도 교육위원회 위원 및 교육감 선거 포함)에 관한 사무,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 및 공공단체의 위탁선거, 국민의식개선활동, 민주시민교육 등 각종 연수교육, 정치관계법의 제·개정 등 정치문화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한다.

•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조합장선거는 2005년 5월 산림조합장선거를 시작으로 농협·수협조합장선거까지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하게 됐다. 2014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2015년 3월 11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게 됐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역량을 총집결하여 관리함으로써 그 동안 공직선거에서 다져온 공명선거 분위기를 민간분야 선거에까지 확산시키는 시발점이 된 매우 중요한 선거였다.

1천445개 조합 중 1천326개 조합이 3월 11일에 동시선거를 실시했으며 '농업협동조합법' 제75조의2에 따른 합병조합 등 119개 조합은 이번 동시조합장선거 참여대상에서 제외됐다.

선거인수는 전체 조합 구성원 수 273만2천281명 중 98.8%인 269만5천818명이었으며, 농협 1천115개, 수협 82개, 산림조합 129개 등 1천326개 조합장을 뽑는 선거에 3천523명이 후보자로 등록해 평균 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투표 당일 투표자 수는 184만3천283명으로 80.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현직 조합장이 당선된 조합은 총 1천326개 조합 중 714개 조합(농협 597, 수협 44, 산림조합 73)으로 53.8%의 당선비율을 보였다.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총 860건으로 고발 170건, 수사의뢰 56건, 경고 581건, 수사기관 이첩이 53건이었다. 조합별로는 농협이 756건, 수협 82건, 산림조합 129건이었다.

• 재·보궐선거

2015년 4월 29일과 10월 28일 두 차례 재·보궐선거를 관리했다.

4월 29일 실시한 재·보궐선거의 경우 국회의원 4곳, 광역의원 1곳, 기초의원 7곳 등 총 12개 선거구에서 총 42명의 후보가 등록해 평균 3.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국회의원 선거의 평균 투표율은 35.9%였으며, 이중 광주광역시 서구율이 41.1%로 최고를, 경기 성남시중원구가 31.5%로 최저를 각각 기록했다. 광역의원선거 투표율은 50.4%, 기초의원선거는 평균 25.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새누리당 3명, 무소속 1명이 당선됐고, 광역의원선거는 새누리당이 1명, 기초의원선거는 새누리당 3명, 새정치민주연합 2명, 무소속이 2명의 당선자를 각각 배출했다.

10월 28일 실시한 재·보궐선거의 경우 기초단체장 1곳, 광역의원 9곳, 기초의원 14곳 등 총 24개 선거구에서 총 68명의 후보가 등록해 평균 2.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기초단체장선거의 투표율은 50.7%였다. 광역의원선거 투표율은 평균 15.3%, 기초의원선거는 평균 24.0%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기초단체장선거에서는 새누리당 1명, 광역의원은 새누리당 7명, 새정치민주연합 2명이 당선됐고, 기초의원선거는 새누리당 7명, 무소속 7명이 당선됐다.

10월 28일 실시한 재·보궐선거는 8월 13일에 재·보궐선거가 연 1회 실시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확정된 재·보궐선거에 대해서만 실시했다.

• 국민투표관리

국민투표는 헌법에 근거해 실시하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주요 정책이나 헌법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뜻을 물을 때 실시하는 것으로, 1962년 헌법 개정과 관련해 처

음 실시된 후 선관위는 총 6회의 국민투표를 관리했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국민투표는 1987년 10월 27일 제6공화국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로서 투표율은 78.2%를 기록했다.

• 재외선거관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재외선거를 도입했다. 2012년 3월 28일부터 6일간 107개국 158개 재외투표소에서 실시된 국회의원선거 재외투표에 재외유권자 12만3천571명 가운데 5만6천456명이 참여, 45.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주요 국가별 투표자수는 미국 1만293명(44.8%), 일본 9천793명(52.6%), 중국 7천876명(32.9%), 캐나다 1천931명(43.7%), 러시아 673명(50.9%), 독일 1천501명(56.9%), 영국 589명(47.4%), 프랑스 876명(51.6%)이었다.

대륙별 투표자수는 아주 2만8천218명(41.1%), 미주 1만7천53명(49.1%), 구주 7천642명(57.0%), 중동 2천305명(50.8%), 아프리카 1천238명(56.8%)이었다.

한편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는 2012년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전 세계 110개국 164개 공관에서 실시됐다. 전체 재외선거인명부 등재자 22만2천389명 중 15만8천235명이 투표했다. 대통령선거 재외선거 신고인수는 8개월 전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했을 때 10만 명(80.0%) 가량 증가했다.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재외투표율은 71.2%로 제19대 총선 투표율(45.7%)보다 25.5%포인트 높았다.

주요 국가별 투표자수를 보면, 미국 3만7천103명(71.6%), 일본 2만5천312명(67.8%), 중국 2만4천330명(68.2%), 캐나다 7천48명(74.2%), 독일 4천252명(78.2%), 러시아 1천452명(74.3%), 영국 2천352명(78.2%), 프랑스 2천459명(76.1%)이었다.

대륙별 투표자수는 아주 7만7천931명(69.0%), 미주 5만3천614명(72.9%), 구주 1만8천623명(77.2%), 중동 5천660명(67.9%), 아프리카 2천407명(70.8%)이었다.

2015년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를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신청 허용, 영구명부제 도입, 공관 외의 장소와 파병부대에 추가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

또한, 2015년 6~7월에는 재외선거 준비상황 점검과 관리요원 능력 함양을 위해 외교부, 구·시·군청 등이 참여한 모의 재외선거를 실시했다. 재외선거 상황실은 2015년 10월부터 설치했으며, 11월 15일부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신청이 시작됐다.

• 선상투표 관리

선상투표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대한민국 선거역사상 처음 실시됐으며, 93.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2005년 8월 18일 원양어선 선원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2012년 2월 29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결과 도입된 제도다.

2015년에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해 선박협회, 선원조합 관계자들과 선상투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와 위성통신 국제구간 및 국내구간에 대한 전용망 구축 및 기표내용을 볼

수 없는 특수 실드팩스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승선 예정인 선원도 선상투표 신고가 가능하게 됐고, 선상투표기간 전에 귀국해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신고할 경우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

• 주민투표 관리

2004년 1월 29일 주민투표법이 제정됨에 따라 2005년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를 시작으로 청주시·청원군통합,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 2011년 서울시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범위 결정, 영주시 평은면 면사무소 부지선정, 2012년 청주시·청원군 통합, 남해군 화력발전소 유치 신청서 제출 등 7차례의 주민투표를 관리했다.

2011년에 실시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주민청구 방식에 의한 최초의 주민투표였으나, 투표결과 투표권자 총수 838만7천278명의 25.7%인 215만9천95명만이 투표에 참여해 개표요건(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투표) 미달로 개표가 무산됐다.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면사무소 부지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는 투표권자 총수 1천981명의 39.2%인 776명이 투표에 참여해 개표한 결과 면사무소 이전장소가 확정됐다. 영주시 주민투표는 주민의 직접청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항이 주민투표에 부쳐진 최초의 사례가 됐다.

앞서 3차례의 실패를 거친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 주민투표는 36.8% 투표율에 79%의 찬성을 얻어 통합으로 결정됐다.

2012년의 남해군화력발전소 유치와 2013년 완주군·전주시 통합에 대한 주민투표는 각각 53.2%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나 과반수의 반대로 부결됐다.

• 주민소환투표 관리

2006년 5월 24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2007년 12월 12일 하남시장과 하남시의회 의원 3명을 대상으로 주민소환투표가 최초로 실시됐다.

하남시장의 주민소환투표 결과 투표권자 총수 10만6천435명의 31.1%인 3만3천58명만이 투표에 참여해 개표요건(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투표) 미달로 주민소환이 무산됐다.

하남시장과 함께 주민소환투표 대상이었던 1명의 하남시의원도 개표요건 미달로 주민소환이 무산됐다. 그러나 2명의 하남시의원은 투표자 수가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을 넘어 개표한 결과, 유효투표수 과반수가 주민소환에 찬성해 2명 모두의 원직을 상실했다.

2009년 8월 26일에는 주민소환제도가 도입된 이래 시·도 단위의 자치단체장으로서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됐으나, 투표권자 총수 41만9천504명의 11%인 4만6천75명만이 투표에 참여해 개표요건 미달로 주민소환이 무산됐다.

2011년 11월 16일에는 과천시시장, 2012년 10월 31일에 실시한 삼척시장, 2013년 12월 4일에 실시한 구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이 추진됐으나 개표요건 미달로 무산됐다.

• 위탁선거 관리

2005년 5월 31일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돼 국립대학의 총장을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대학의 총장 후보자 추천선거 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2006년 대구교육대학교를 시작으로 12개 대학, 2007년 15개 대학, 2008년 10개 대학, 2009년 9개 대학, 2010년 9개 대학, 2011년 17개 대학, 2012년 4개 대학, 2015년 1개 대학 등 총 77개 대학의 총장 후보자 추천선거를 관리했다.

또한, 2004년 12월 31일 농협법, 수협법, 산림조합법의 개정으로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조합장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하도록 조합장 선출제도가 개선됐다. 이러한 제도개선의 취지는 축적된 공직선거 관리경험을 보유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선거를 관리함으로써, 조합장선거도 공직선거에 준하는 바르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05년 256개 조합을 시작으로 2015년 23개(농협 11, 수협 4, 산림조합 8개)의 조합선거를 위탁관리하는 등 총 2천494개의 조합장선거를 관리했다.

2010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개정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비사업조합 임원선거의 위탁관리와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임원선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생활주변 선거관리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영역이 대폭 확장돼 선거관리위원회는 2010년 8개 공동주택, 2011년에는 11개 정비사업조합과 5개 공동주택, 2012년에는 2개 정비사업조합과 2개 공동주택, 2013년 정비사업조합 2개, 공동주택 5개, 2014년 정비사업조합 3개, 공동주택 76개, 2015년 정비사업조합 7개, 공동주택 241개의 임원선거를 관리했다.

2011년에는 새마을금고법의 개정으로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관리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돼 2011년에 1개, 2012년에 2개, 2013년 1개, 2014년 3개, 2015년 7개의 새마을금고 임원선거를 관리했다.

• 정당사무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과 정당법에 근거해 정당이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고 정책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당의 등록·변경·활동 및 소멸에 관한 감독사무와 정책추진에 대한 실적공개 및 정책토론회 개최, 정책정당으로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5년 12월 31일 현재 중앙선거위에 등록된 정당은 20개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개혁국민신당, 겨레자유평화통일당, 경제민주당, 고용복지연극선진화연대, 공화당, 국민행복당, 국제녹색당, 그린불교연합당, 기독교민주당, 노동당, 녹색당, 대한민국당, 민주당, 새마을당, 애국당, 한국국민당, 한나라당이다.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총 16개가 등록돼 활동하고 있다. 민주연합, 진리대안당, 좋은원칙, 사회민주당, 자유건국당, 한반도미래연합, 기독교자유당, 복지국가당, 친박연대, 신민당, 거지당, 대한민국의사민정당, 신한국당, 국민의회의, 한누리평화통일

당, 친박연대가 중앙선거위에 결성신고를 했다.

• 정치자금사무

2015년에 국고보조금 총 394억4천100만원을 정당에 지급했다. 정당별 지급액은 새누리당 195억7천36만7천520원, 더불어민주당(구 새정치민주연합) 177억4천701만220원, 정의당 21억2천362만2천260원이다.

2015년 한 해 동안 6만1천여 명이 총 56억여 원을 선관위에 기탁했다. 이 중 10만원 이하 소액기부자는 6만1천여 명으로 전체 기탁자의 99.84%, 기탁금 총액의 99.84%인 55억8천여 만원에 이르렀다.

정당별로 새누리당 28억955만3천680원, 더불어민주당 24억8천683만6천580원, 정의당 3억285만8천20원을 지급했다.

• 민주시민교육

중앙선거위 산하 선거연수원에서는 국민의식 개선을 통한 깨끗한 선거·정치문화 정착을 위해 당원, 교사, 학생, 시민단체 회원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5년에는 선거·정당관계자 128회에 1만9천828명, 유권자 232회에 1만4천264명, 미래유권자 1천641회에 11만2천229명, 다문화가족 등 254회에 6천497명, 외국인 연수 2회에 3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주의 완화와 유권자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선, 정당정치 활성화'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2월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의견으로는 지역주의 완화와 유권자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지역구 후보자의 비례대표선거 동시 입후보를 허용하고, 정당 후보자추천의 민주성 강화를 위한 '전국동시 국민경선제' 실시방안 마련, 선거 신뢰 확보 및 후보자 책임성 강화를 위한 후보자 사퇴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정당·정치자금법 주요 개정의견으로는 정당의 생활정치 활성화를 위한 '구·시·군당' 허용,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법인·단체의 선관위 정치자금 기탁' 허용,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후원금 모금한도액 현실화, 국고보조금 지출의 투명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 정치관계법 개정

2015년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투표용지 후보자란 사이 여백 설정,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시 사직기한을 선거일 전 30일까지로 변경, 여론조사결과 왜곡·공표행위 처벌 강화, 착신전화 이용 등 선거여론조사 왜곡행위 금지, 당내경선 및 당내경선 선거인 모집 등에 안심번호 활용, 재외선거의 인터넷을 통한 신고·신청 허용, 재외선거 영구명부제 도입,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재외선거인 및 선상투표신고자의 귀국투표를 허용하도록 정치관계법이 개정됐다.